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ACRC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3 - 991호

의 안 명 「소상공인 폐업 이후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1)」

대상기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의 결 일 2023. 12. 18.

주 문

「소상공인 폐업 이후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1)」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12월 18일

위 원 장 김 홍 일

위 원 정 승 윤

위 원 김 태 규

위 원 박 종 민

위 원 권 석 원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목

위 원 송 현 주

위 원 홍 세 옥

위 원 홍 봉 주

위 원 김 태 영

위 원 최 진 영

위 원 장 김 홍 일

**소상공인 폐업 이후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1)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

2023. 12.



국민권익위원회

A C B C

목 차

I. 추진개요

□ 추진배경

◆ (국정과제) 0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고금리 기조와 물가 상승세, 공공요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 **폐업** 급증

※ '23.1월~4월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 '22년 같은 기간보다 43.3% 증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고용안전망**으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가입률이 낮아** 폐업 시 그 피해를 자력으로 감당

※ '22년 기준 전체 자영업자 수(5,680천 명) 대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43천 명) 약 0.75%

-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한 재기를 돕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 추진경과

- '23. 9 ~ 10월 현황 및 실태조사
- '23. 10 ~ 11월 개선방안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 '23. 12월 소위, 전원위 상정

II.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현황

1 자영업자 고용보험(고용노동부)

- ☐ (사업목적)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 가입요건 완화: ('12년)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 → ('16년) 1년 이내 가입
→ ('18년) 5년 이내 가입 → ('19.7월) 제한 폐지
 -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 (가입방식)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임의가입)
- ☐ (보험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7개 등급)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하고, 선택한 기준보수에서 **보험요율(2.25%)**을 곱해서 보험료 산정
 - *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
- ☐ 실업급여
 - (수급요건)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간 지급
 - (폐업사유) 「고용보험법」 제69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
 - ※ 6개월 적자 및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 ☐ 가입자 현황(출처 : 고용행정통계)

(단위: 천 명, %)

	'19	'20	'21	'22	'23.8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B)	22	30	37	43	45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 (지원예산) '21년 2,561백만원, '22년 3,629백만원, '23년 5,000백만원
- ☐ (지원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 ☐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 (지원내용) 가입자가 월마다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단위 :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50%		30%		20%		
지원액	20,475	23,400	15,795	17,550	12,870	14,040	15,210

3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지방자치단체)

- ☐ (사업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과 별개로 지자체 *에서도 지원, 공단의 지원과 중복 수혜 가능(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규모 및 범위 상이)

*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대전, 강원, 충남, 울산, 광주 9개 지자체

- ☐ (지원기간) 1~5년
- ☐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 ☐ (지원내용) 가입자가 월마다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20~30%를 환급 지원

Ⅲ.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저조 원인

1 불리한 혜택 및 조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보험원리, 자영업자의 영업 양태, 임의가입 방식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
- 그러나,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보험료 부담이 높는데 반해 혜택은 차이가 있어 가입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
 - ※ 실부담 보험료율: 임금근로자 0.9%, 자영업자 2.25%
 - 반면, 혜택 범위, 최소 가입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등에서 임금근로자와 차이

■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비교

- ① (혜택범위) 자영업자는 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연장급여 대상에서 제외
- ② (최소가입기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자영업자는 12개월로 임금근로자의 6개월보다 길
- ③ (실업급여 수급기간) 자영업자는 120~210일로 임금근로자의 120~270일보다 짧음

- 자영업자에게도 모성보호, 조기재취업수당 등 적용을 요구하는 민원 다수 발생

-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는데, 자영업자 가입자는 육아휴직 급여 자체를 받을 수 없음.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국민신문고, '23.9.)
- 자영업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국민신문고, '23.6.)

2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인식조사 결과

-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여러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지원 내용에 관한 인식이 낮음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미가입 사유로 보험료 부담의 응답이 높은 점은,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도 낮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인식조사(1)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2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이용자 대상 설문)

〈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사유〉

(단위 : %, n=3,140)

고용보험료가 부담 돼서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필요성 못 느껴서	실업급여 요건이 까다로워서	신청 절차 복잡해서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수급액이 적어서	기타
34.7	25.5	17.5	6.4	4.3	3.2	8.4

■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인식조사(2) (출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연구회 활동보고서(22.3),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동 연구회에 제출한 자료)

〈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사유〉

(단위 : %, n=197)

잘 알지 못해서	보험료가 부담 돼서	의무가입이 아니어서	혜택이 많지 않아서	기타
40.1	33.0	13.2	11.7	2.0

■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인식조사(3)** (출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연구회 활동보고서('22.3),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연구회에 제출한 자료)

<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 인지 여부>

(단위 : %, n=7)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44.9%	55.1%

<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n=7)

폐업상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실업급여 등 보험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타 보험료와의 연계의 부담 때문에	소득노출에 따른 세금 증가 가능성 때문에	기타
29.4	85.4	22.6	8.1	25.6	7.3	2.7

□ 기존 홍보 방식의 한계

- 관계기관의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2년부터 상·하반기 집중 홍보기간 운영 등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와 MOU를 통한 협업 홍보 강화, 국세청(세무서)에 홍보 리플릿 비치 및 현수막 거치 등 추진

- 인지도 제고를 위해 기존 홍보 방식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여 홍보 강화 방안 수립·실행 필요

□ 관계기관의 정보제공 미흡

-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여 제도 전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

- 근로복지공단은 가입 관련 정보(가입대상, 보험료, 보험소멸, 가입방법 등) 위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정보 위주로 안내

< 기관별 홈페이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정보 제공 현황 >

홈페이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제공정보	미제공 정보
고용노동부 대표 홈페이지	① 가입대상 및 보험료 ② 혜택내용(실업급여 등) ③ 실업급여 수급요건	④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복지공단 대표 홈페이지	① 가입대상 및 보험료	② 혜택내용 ③ 실업급여 수급요건 ④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홈페이지	① 가입대상 및 보험료 ② 혜택내용 ③ 실업급여 수급요건	④ 고용보험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대표 홈페이지	④ 고용보험료 지원	① 가입대상 및 보험료 ② 혜택내용 ③ 실업급여 수급요건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표 홈페이지	④ 고용보험료 지원	① 가입대상 및 보험료 ② 혜택내용 ③ 실업급여 수급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	① 가입대상 및 보험료 ④ 고용보험료 지원	② 혜택내용 ③ 실업급여 수급요건

- 특히, 가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

* 고용노동부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도 '적자지속, 매출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 정도로만 안내

- 결국 가입에 관심이 있는 자영업자가 스스로 여러 곳에서 정보를 취합하거나 관계 법령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감내

○ 또한, 유선 및 방문 문의에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안내하는 경향이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 빈발

- 근로복지공단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안내, 고용센터는 가입 관련 안내를 개선할 필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문의하니 고용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여기에 문의하라고 함.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하니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수급자격을 왜 물어보냐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가입부터 하고 오라고 안내함. 결국 기분 나빠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함 (국민신문고, '16.10.)
- 어머니를 대신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대전 고용센터로 옮겨가며 문의를 해야만 했음. 각 기관에서 단편적인 업무만을 맡고 있었고 통합적인 질문을 위해서 본인들 관련 업무가 아니라며 계속 다른 기관 전화번호를 알려줌. 고용보험을 알아보는데 여러 기관에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 불편함. (국민신문고, '21.2.)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 폐업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이 질문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니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라고 회신이 왔음. (국민신문고, '23.3.)

3 까다로운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까다롭다는 인식

-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까다롭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인식이 가입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인식조사에서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이 미가입 주요 사유로 나타남

□ '적자 또는 매출액 감소' 요건 충족의 어려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되는 폐업사유를 정하고 있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① 법 제69조의7 제3호에서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가.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나.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다만, (중략)

- 다.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피해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 가. ~ 나. (생략)

4. 그 밖에 생산량, 영업이익, ¹⁾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¹⁰⁾ ¹¹⁾ ¹²⁾ ¹³⁾ ¹⁴⁾ ¹⁵⁾ ¹⁶⁾ ¹⁷⁾ ¹⁸⁾ ¹⁹⁾ ²⁰⁾ ²¹⁾ ²²⁾ ²³⁾ ²⁴⁾ ²⁵⁾ ²⁶⁾ ²⁷⁾ ²⁸⁾ ²⁹⁾ ³⁰⁾ ³¹⁾ ³²⁾ ³³⁾ ³⁴⁾ ³⁵⁾ ³⁶⁾ ³⁷⁾ ³⁸⁾ ³⁹⁾ ⁴⁰⁾ ⁴¹⁾ ⁴²⁾ ⁴³⁾ ⁴⁴⁾ ⁴⁵⁾ ⁴⁶⁾ ⁴⁷⁾ ⁴⁸⁾ ⁴⁹⁾ ⁵⁰⁾ ⁵¹⁾ ⁵²⁾ ⁵³⁾ ⁵⁴⁾ ⁵⁵⁾ ⁵⁶⁾ ⁵⁷⁾ ⁵⁸⁾ ⁵⁹⁾ ⁶⁰⁾ ⁶¹⁾ ⁶²⁾ ⁶³⁾ ⁶⁴⁾ ⁶⁵⁾ ⁶⁶⁾ ⁶⁷⁾ ⁶⁸⁾ ⁶⁹⁾ ⁷⁰⁾ ⁷¹⁾ ⁷²⁾ ⁷³⁾ ⁷⁴⁾ ⁷⁵⁾ ⁷⁶⁾ ⁷⁷⁾ ⁷⁸⁾ ⁷⁹⁾ ⁸⁰⁾ ⁸¹⁾ ⁸²⁾ ⁸³⁾ ⁸⁴⁾ ⁸⁵⁾ ⁸⁶⁾ ⁸⁷⁾ ⁸⁸⁾ ⁸⁹⁾ ⁹⁰⁾ ⁹¹⁾ ⁹²⁾ ⁹³⁾ ⁹⁴⁾ ⁹⁵⁾ ⁹⁶⁾ ⁹⁷⁾ ⁹⁸⁾ ⁹⁹⁾ ¹⁰⁰⁾ ¹⁰¹⁾ ¹⁰²⁾ ¹⁰³⁾ ¹⁰⁴⁾ ¹⁰⁵⁾ ¹⁰⁶⁾ ¹⁰⁷⁾ ¹⁰⁸⁾ ¹⁰⁹⁾ ¹¹⁰⁾ ¹¹¹⁾ ¹¹²⁾ ¹¹³⁾ ¹¹⁴⁾ ¹¹⁵⁾ ¹¹⁶⁾ ¹¹⁷⁾ ¹¹⁸⁾ ¹¹⁹⁾ ¹²⁰⁾ ¹²¹⁾ ¹²²⁾ ¹²³⁾ ¹²⁴⁾ ¹²⁵⁾ ¹²⁶⁾ ¹²⁷⁾ ¹²⁸⁾ ¹²⁹⁾ ¹³⁰⁾ ¹³¹⁾ ¹³²⁾ ¹³³⁾ ¹³⁴⁾ ¹³⁵⁾ ¹³⁶⁾ ¹³⁷⁾ ¹³⁸⁾ ¹³⁹⁾ ¹⁴⁰⁾ ¹⁴¹⁾ ¹⁴²⁾ ¹⁴³⁾ ¹⁴⁴⁾ ¹⁴⁵⁾ ¹⁴⁶⁾ ¹⁴⁷⁾ ¹⁴⁸⁾ ¹⁴⁹⁾ ¹⁵⁰⁾ ¹⁵¹⁾ ¹⁵²⁾ ¹⁵³⁾ ¹⁵⁴⁾ ¹⁵⁵⁾ ¹⁵⁶⁾ ¹⁵⁷⁾ ¹⁵⁸⁾ ¹⁵⁹⁾ ¹⁶⁰⁾ ¹⁶¹⁾ ¹⁶²⁾ ¹⁶³⁾ ¹⁶⁴⁾ ¹⁶⁵⁾ ¹⁶⁶⁾ ¹⁶⁷⁾ ¹⁶⁸⁾ ¹⁶⁹⁾ ¹⁷⁰⁾ ¹⁷¹⁾ ¹⁷²⁾ ¹⁷³⁾ ¹⁷⁴⁾ ¹⁷⁵⁾ ¹⁷⁶⁾ ¹⁷⁷⁾ ¹⁷⁸⁾ ¹⁷⁹⁾ ¹⁸⁰⁾ ¹⁸¹⁾ ¹⁸²⁾ ¹⁸³⁾ ¹⁸⁴⁾ ¹⁸⁵⁾ ¹⁸⁶⁾ ¹⁸⁷⁾ ¹⁸⁸⁾ ¹⁸⁹⁾ ¹⁹⁰⁾ ¹⁹¹⁾ ¹⁹²⁾ ¹⁹³⁾ ¹⁹⁴⁾ ¹⁹⁵⁾ ¹⁹⁶⁾ ¹⁹⁷⁾ ¹⁹⁸⁾ ¹⁹⁹⁾ ²⁰⁰⁾ ²⁰¹⁾ ²⁰²⁾ ²⁰³⁾ ²⁰⁴⁾ ²⁰⁵⁾ ²⁰⁶⁾ ²⁰⁷⁾ ²⁰⁸⁾ ²⁰⁹⁾ ²¹⁰⁾ ²¹¹⁾ ²¹²⁾ ²¹³⁾ ²¹⁴⁾ ²¹⁵⁾ ²¹⁶⁾ ²¹⁷⁾ ²¹⁸⁾ ²¹⁹⁾ ²²⁰⁾ ²²¹⁾ ²²²⁾ ²²³⁾ ²²⁴⁾ ²²⁵⁾ ²²⁶⁾ ²²⁷⁾ ²²⁸⁾ ²²⁹⁾ ²³⁰⁾ ²³¹⁾ ²³²⁾ ²³³⁾ ²³⁴⁾ ²³⁵⁾ ²³⁶⁾ ²³⁷⁾ ²³⁸⁾ ²³⁹⁾ ²⁴⁰⁾ ²⁴¹⁾ ²⁴²⁾ ²⁴³⁾ ²⁴⁴⁾ ²⁴⁵⁾ ²⁴⁶⁾ ²⁴⁷⁾ ²⁴⁸⁾ ²⁴⁹⁾ ²⁵⁰⁾ ²⁵¹⁾ ²⁵²⁾ ²⁵³⁾ ²⁵⁴⁾ ²⁵⁵⁾ ²⁵⁶⁾ ²⁵⁷⁾ ²⁵⁸⁾ ²⁵⁹⁾ ²⁶⁰⁾ ²⁶¹⁾ ²⁶²⁾ ²⁶³⁾ ²⁶⁴⁾ ²⁶⁵⁾ ²⁶⁶⁾ ²⁶⁷⁾ ²⁶⁸⁾ ²⁶⁹⁾ ²⁷⁰⁾ ²⁷¹⁾ ²⁷²⁾ ²⁷³⁾ ²⁷⁴⁾ ²⁷⁵⁾ ²⁷⁶⁾ ²⁷⁷⁾ ²⁷⁸⁾ ²⁷⁹⁾ ²⁸⁰⁾ ²⁸¹⁾ ²⁸²⁾ ²⁸³⁾ ²⁸⁴⁾ ²⁸⁵⁾ ²⁸⁶⁾ ²⁸⁷⁾ ²⁸⁸⁾ ²⁸⁹⁾ ²⁹⁰⁾ ²⁹¹⁾ ²⁹²⁾ ²⁹³⁾ ²⁹⁴⁾ ²⁹⁵⁾ ²⁹⁶⁾ ²⁹⁷⁾ ²⁹⁸⁾ ²⁹⁹⁾ ³⁰⁰⁾ ³⁰¹⁾ ³⁰²⁾ ³⁰³⁾ ³⁰⁴⁾ ³⁰⁵⁾ ³⁰⁶⁾ ³⁰⁷⁾ ³⁰⁸⁾ ³⁰⁹⁾ ³¹⁰⁾ ³¹¹⁾ ³¹²⁾ ³¹³⁾ ³¹⁴⁾ ³¹⁵⁾ ³¹⁶⁾ ³¹⁷⁾ ³¹⁸⁾ ³¹⁹⁾ ³²⁰⁾ ³²¹⁾ ³²²⁾ ³²³⁾ ³²⁴⁾ ³²⁵⁾ ³²⁶⁾ ³²⁷⁾ ³²⁸⁾ ³²⁹⁾ ³³⁰⁾ ³³¹⁾ ³³²⁾ ³³³⁾ ³³⁴⁾ ³³⁵⁾ ³³⁶⁾ ³³⁷⁾ ³³⁸⁾ ³³⁹⁾ ³⁴⁰⁾ ³⁴¹⁾ ³⁴²⁾ ³⁴³⁾ ³⁴⁴⁾ ³⁴⁵⁾ ³⁴⁶⁾ ³⁴⁷⁾ ³⁴⁸⁾ ³⁴⁹⁾ ³⁵⁰⁾ ³⁵¹⁾ ³⁵²⁾ ³⁵³⁾ ³⁵⁴⁾ ³⁵⁵⁾ ³⁵⁶⁾ ³⁵⁷⁾ ³⁵⁸⁾ ³⁵⁹⁾ ³⁶⁰⁾ ³⁶¹⁾ ³⁶²⁾ ³⁶³⁾ ³⁶⁴⁾ ³⁶⁵⁾ ³⁶⁶⁾ ³⁶⁷⁾ ³⁶⁸⁾ ³⁶⁹⁾ ³⁷⁰⁾ ³⁷¹⁾ ³⁷²⁾ ³⁷³⁾ ³⁷⁴⁾ ³⁷⁵⁾ ³⁷⁶⁾ ³⁷⁷⁾ ³⁷⁸⁾ ³⁷⁹⁾ ³⁸⁰⁾ ³⁸¹⁾ ³⁸²⁾ ³⁸³⁾ ³⁸⁴⁾ ³⁸⁵⁾ ³⁸⁶⁾ ³⁸⁷⁾ ³⁸⁸⁾ ³⁸⁹⁾ ³⁹⁰⁾ ³⁹¹⁾ ³⁹²⁾ ³⁹³⁾ ³⁹⁴⁾ ³⁹⁵⁾ ³⁹⁶⁾ ³⁹⁷⁾ ³⁹⁸⁾ ³⁹⁹⁾ ⁴⁰⁰⁾ ⁴⁰¹⁾ ⁴⁰²⁾ ⁴⁰³⁾ ⁴⁰⁴⁾ ⁴⁰⁵⁾ ⁴⁰⁶⁾ ⁴⁰⁷⁾ ⁴⁰⁸⁾ ⁴⁰⁹⁾ ⁴¹⁰⁾ ⁴¹¹⁾ ⁴¹²⁾ ⁴¹³⁾ ⁴¹⁴⁾ ⁴¹⁵⁾ ⁴¹⁶⁾ ⁴¹⁷⁾ ⁴¹⁸⁾ ⁴¹⁹⁾ ⁴²⁰⁾ ⁴²¹⁾ ⁴²²⁾ ⁴²³⁾ ⁴²⁴⁾ ⁴²⁵⁾ ⁴²⁶⁾ ⁴²⁷⁾ ⁴²⁸⁾ ⁴²⁹⁾ ⁴³⁰⁾ ⁴³¹⁾ ⁴³²⁾ ⁴³³⁾ ⁴³⁴⁾ ⁴³⁵⁾ ⁴³⁶⁾ ⁴³⁷⁾ ⁴³⁸⁾ ⁴³⁹⁾ ⁴⁴⁰⁾ ⁴⁴¹⁾ ⁴⁴²⁾ ⁴⁴³⁾ ⁴⁴⁴⁾ ⁴⁴⁵⁾ ⁴⁴⁶⁾ ⁴⁴⁷⁾ ⁴⁴⁸⁾ ⁴⁴⁹⁾ ⁴⁵⁰⁾ ⁴⁵¹⁾ ⁴⁵²⁾ ⁴⁵³⁾ ⁴⁵⁴⁾ ⁴⁵⁵⁾ ⁴⁵⁶⁾ ⁴⁵⁷⁾ ⁴⁵⁸⁾ ⁴⁵⁹⁾ ⁴⁶⁰⁾ ⁴⁶¹⁾ ⁴⁶²⁾ ⁴⁶³⁾ ⁴⁶⁴⁾ ⁴⁶⁵⁾ ⁴⁶⁶⁾ ⁴⁶⁷⁾ ⁴⁶⁸⁾ ⁴⁶⁹⁾ ⁴⁷⁰⁾ ⁴⁷¹⁾ ⁴⁷²⁾ ⁴⁷³⁾ ⁴⁷⁴⁾ ⁴⁷⁵⁾ ⁴⁷⁶⁾ ⁴⁷⁷⁾ ⁴⁷⁸⁾ ⁴⁷⁹⁾ ⁴⁸⁰⁾ ⁴⁸¹⁾ ⁴⁸²⁾ ⁴⁸³⁾ ⁴⁸⁴⁾ ⁴⁸⁵⁾ ⁴⁸⁶⁾ ⁴⁸⁷⁾ ⁴⁸⁸⁾ ⁴⁸⁹⁾ ⁴⁹⁰⁾ ⁴⁹¹⁾ ⁴⁹²⁾ ⁴⁹³⁾ ⁴⁹⁴⁾ ⁴⁹⁵⁾ ⁴⁹⁶⁾ ⁴⁹⁷⁾ ⁴⁹⁸⁾ ⁴⁹⁹⁾ ⁵⁰⁰⁾ ⁵⁰¹⁾ ⁵⁰²⁾ ⁵⁰³⁾ ⁵⁰⁴⁾ ⁵⁰⁵⁾ ⁵⁰⁶⁾ ⁵⁰⁷⁾ ⁵⁰⁸⁾ ⁵⁰⁹⁾ ⁵¹⁰⁾ ⁵¹¹⁾ ⁵¹²⁾ ⁵¹³⁾ ⁵¹⁴⁾ ⁵¹⁵⁾ ⁵¹⁶⁾ ⁵¹⁷⁾ ⁵¹⁸⁾ ⁵¹⁹⁾ ⁵²⁰⁾ ⁵²¹⁾ ⁵²²⁾ ⁵²³⁾ ⁵²⁴⁾ ⁵²⁵⁾ ⁵²⁶⁾ ⁵²⁷⁾ ⁵²⁸⁾ ⁵²⁹⁾ ⁵³⁰⁾ ⁵³¹⁾ ⁵³²⁾ ⁵³³⁾ ⁵³⁴⁾ ⁵³⁵⁾ ⁵³⁶⁾ ⁵³⁷⁾ ⁵³⁸⁾ ⁵³⁹⁾ ⁵⁴⁰⁾ ⁵⁴¹⁾ ⁵⁴²⁾ ⁵⁴³⁾ ⁵⁴⁴⁾ ⁵⁴⁵⁾ ⁵⁴⁶⁾ ⁵⁴⁷⁾ ⁵⁴⁸⁾ ⁵⁴⁹⁾ ⁵⁵⁰⁾ ⁵⁵¹⁾ ⁵⁵²⁾ ⁵⁵³⁾ ⁵⁵⁴⁾ ⁵⁵⁵⁾ ⁵⁵⁶⁾ ⁵⁵⁷⁾ ⁵⁵⁸⁾ ⁵⁵⁹⁾ ⁵⁶⁰⁾ ⁵⁶¹⁾ ⁵⁶²⁾ ⁵⁶³⁾ ⁵⁶⁴⁾ ⁵⁶⁵⁾ ⁵⁶⁶⁾ ⁵⁶⁷⁾ ⁵⁶⁸⁾ ⁵⁶⁹⁾ ⁵⁷⁰⁾ ⁵⁷¹⁾ ⁵⁷²⁾ ⁵⁷³⁾ ⁵⁷⁴⁾ ⁵⁷⁵⁾ ⁵⁷⁶⁾ ⁵⁷⁷⁾ ⁵⁷⁸⁾ ⁵⁷⁹⁾ ⁵⁸⁰⁾ ⁵⁸¹⁾ ⁵⁸²⁾ ⁵⁸³⁾ ⁵⁸⁴⁾ ⁵⁸⁵⁾ ⁵⁸⁶⁾ ⁵⁸⁷⁾ ⁵⁸⁸⁾ ⁵⁸⁹⁾ ⁵⁹⁰⁾ ⁵⁹¹⁾ ⁵⁹²⁾ ⁵⁹³⁾ ⁵⁹⁴⁾ ⁵⁹⁵⁾ ⁵⁹⁶⁾ ⁵⁹⁷⁾ ⁵⁹⁸⁾ ⁵⁹⁹⁾ ⁶⁰⁰⁾ ⁶⁰¹⁾ ⁶⁰²⁾ ⁶⁰³⁾ ⁶⁰⁴⁾ ⁶⁰⁵⁾ ⁶⁰⁶⁾ ⁶⁰⁷⁾ ⁶⁰⁸⁾ ⁶⁰⁹⁾ ⁶¹⁰⁾ ⁶¹¹⁾ ⁶¹²⁾ ⁶¹³⁾ ⁶¹⁴⁾ ⁶¹⁵⁾ ⁶¹⁶⁾ ⁶¹⁷⁾ ⁶¹⁸⁾ ⁶¹⁹⁾ ⁶²⁰⁾ ⁶²¹⁾ ⁶²²⁾ ⁶²³⁾ ⁶²⁴⁾ ⁶²⁵⁾ ⁶²⁶⁾ ⁶²⁷⁾ ⁶²⁸⁾ ⁶²⁹⁾ ⁶³⁰⁾ ⁶³¹⁾ ⁶³²⁾ ⁶³³⁾ ⁶³⁴⁾ ⁶³⁵⁾ ⁶³⁶⁾ ⁶³⁷⁾ ⁶³⁸⁾ ⁶³⁹⁾ ⁶⁴⁰⁾ ⁶⁴¹⁾ ⁶⁴²⁾ ⁶⁴³⁾ ⁶⁴⁴⁾ ⁶⁴⁵⁾ ⁶⁴⁶⁾ ⁶⁴⁷⁾ ⁶⁴⁸⁾ ⁶⁴⁹⁾ ⁶⁵⁰⁾ ⁶⁵¹⁾ ⁶⁵²⁾ ⁶⁵³⁾ ⁶⁵⁴⁾ ⁶⁵⁵⁾ ⁶⁵⁶⁾ ⁶⁵⁷⁾ ⁶⁵⁸⁾ ⁶⁵⁹⁾ ⁶⁶⁰⁾ ⁶⁶¹⁾ ⁶⁶²⁾ ⁶⁶³⁾ ⁶⁶⁴⁾ ⁶⁶⁵⁾ ⁶⁶⁶⁾ ⁶⁶⁷⁾ ⁶⁶⁸⁾ ⁶⁶⁹⁾ ⁶⁷⁰⁾ ⁶⁷¹⁾ ⁶⁷²⁾ ⁶⁷³⁾ ⁶⁷⁴⁾ ⁶⁷⁵⁾ ⁶⁷⁶⁾ ⁶⁷⁷⁾ ⁶⁷⁸⁾ ⁶⁷⁹⁾ ⁶⁸⁰⁾ ⁶⁸¹⁾ ⁶⁸²⁾ ⁶⁸³⁾ ⁶⁸⁴⁾ ⁶⁸⁵⁾ ⁶⁸⁶⁾ ⁶⁸⁷⁾ ⁶⁸⁸⁾ ⁶⁸⁹⁾ ⁶⁹⁰⁾ ⁶⁹¹⁾ ⁶⁹²⁾ ⁶⁹³⁾ ⁶⁹⁴⁾ ⁶⁹⁵⁾ ⁶⁹⁶⁾ ⁶⁹⁷⁾ ⁶⁹⁸⁾ ⁶⁹⁹⁾ ⁷⁰⁰⁾ ⁷⁰¹⁾ ⁷⁰²⁾ ⁷⁰³⁾ ⁷⁰⁴⁾ ⁷⁰⁵⁾ ⁷⁰⁶⁾ ⁷⁰⁷⁾ ⁷⁰⁸⁾ ⁷⁰⁹⁾ ⁷¹⁰⁾ ⁷¹¹⁾ ⁷¹²⁾ ⁷¹³⁾ ⁷¹⁴⁾ ⁷¹⁵⁾ ⁷¹⁶⁾ ⁷¹⁷⁾ ⁷¹⁸⁾ ⁷¹⁹⁾ ⁷²⁰⁾ ⁷²¹⁾ ⁷²²⁾ ⁷²³⁾ ⁷²⁴⁾ ⁷²⁵⁾ ⁷²⁶⁾ ⁷²⁷⁾ ⁷²⁸⁾ ⁷²⁹⁾ ⁷³⁰⁾ ⁷³¹⁾ ⁷³²⁾ ⁷³³⁾ ⁷³⁴⁾ ⁷³⁵⁾ ⁷³⁶⁾ ⁷³⁷⁾ ⁷³⁸⁾ ⁷³⁹⁾ ⁷⁴⁰⁾ ⁷⁴¹⁾ ⁷⁴²⁾ ⁷⁴³⁾ ⁷⁴⁴⁾ ⁷⁴⁵⁾ ⁷⁴⁶⁾ ⁷⁴⁷⁾ ⁷⁴⁸⁾ ⁷⁴⁹⁾ ⁷⁵⁰⁾ ⁷⁵¹⁾ ⁷⁵²⁾ ⁷⁵³⁾ ⁷⁵⁴⁾ ⁷⁵⁵⁾ ⁷⁵⁶⁾ ⁷⁵⁷⁾ ⁷⁵⁸⁾ ⁷⁵⁹⁾ ⁷⁶⁰⁾ ⁷⁶¹⁾ ⁷⁶²⁾ ⁷⁶³⁾ ⁷⁶⁴⁾ ⁷⁶⁵⁾ ⁷⁶⁶⁾ ⁷⁶⁷⁾ ⁷⁶⁸⁾ ⁷⁶⁹⁾ ⁷⁷⁰⁾ ⁷⁷¹⁾ ⁷⁷²⁾ ⁷⁷³⁾ ⁷⁷⁴⁾ ⁷⁷⁵⁾ ⁷⁷⁶⁾ ⁷⁷⁷⁾ ⁷⁷⁸⁾ ⁷⁷⁹⁾ ⁷⁸⁰⁾ ⁷⁸¹⁾ ⁷⁸²⁾ ⁷⁸³⁾ ⁷⁸⁴⁾ ⁷⁸⁵⁾ ⁷⁸⁶⁾ ⁷⁸⁷⁾ ⁷⁸⁸⁾ ⁷⁸⁹⁾ ⁷⁹⁰⁾ ⁷⁹¹⁾ ⁷⁹²⁾ ⁷⁹³⁾ ⁷⁹⁴⁾ ⁷⁹⁵⁾ ⁷⁹⁶⁾ ⁷⁹⁷⁾ ⁷⁹⁸⁾ ⁷⁹⁹⁾ ⁸⁰⁰⁾ ⁸⁰¹⁾ ⁸⁰²⁾ ⁸⁰³⁾ ⁸⁰⁴⁾ ⁸⁰⁵⁾ ⁸⁰⁶⁾ ⁸⁰⁷⁾ ⁸⁰⁸⁾ ⁸⁰⁹⁾ ⁸¹⁰⁾ ⁸¹¹⁾ ⁸¹²⁾ ⁸¹³⁾ ⁸¹⁴⁾ ⁸¹⁵⁾ ⁸¹⁶⁾ ⁸¹⁷⁾ ⁸¹⁸⁾ ⁸¹⁹⁾ ⁸²⁰⁾ ⁸²¹⁾ ⁸²²⁾ ⁸²³⁾ ⁸²⁴⁾ ⁸²⁵⁾ ⁸²⁶⁾ ⁸²⁷⁾ ⁸²⁸⁾ ⁸²⁹⁾ ⁸³⁰⁾ ⁸³¹⁾ ⁸³²⁾ ⁸³³⁾ ⁸³⁴⁾ ⁸³⁵⁾ ⁸³⁶⁾ ⁸³⁷⁾ ⁸³⁸⁾ ⁸³⁹⁾ ⁸⁴⁰⁾ ⁸⁴¹⁾ ⁸⁴²⁾ ⁸⁴³⁾ ⁸⁴⁴⁾ ⁸⁴⁵⁾ ⁸⁴⁶⁾ ⁸⁴⁷⁾ ⁸⁴⁸⁾ ⁸⁴⁹⁾ ⁸⁵⁰⁾ ⁸⁵¹⁾ ⁸⁵²⁾ ⁸⁵³⁾ ⁸⁵⁴⁾ ⁸⁵⁵⁾ ⁸⁵⁶⁾ ⁸⁵⁷⁾ ⁸⁵⁸⁾ ⁸⁵⁹⁾ ⁸⁶⁰⁾ ⁸⁶¹⁾ ⁸⁶²⁾ ⁸⁶³⁾ ⁸⁶⁴⁾ ⁸⁶⁵⁾ ⁸⁶⁶⁾ ⁸⁶⁷⁾ ⁸⁶⁸⁾ ⁸⁶⁹⁾ ⁸⁷⁰⁾ ⁸⁷¹⁾ ⁸⁷²⁾ ⁸⁷³⁾ ⁸⁷⁴⁾ ⁸⁷⁵⁾ ⁸⁷⁶⁾ ⁸⁷⁷⁾ ⁸⁷⁸⁾ ⁸⁷⁹⁾ ⁸⁸⁰⁾ ⁸⁸¹⁾ ⁸⁸²⁾ ⁸⁸³⁾ ⁸⁸⁴⁾ ⁸⁸⁵⁾ ⁸⁸⁶⁾ ⁸⁸⁷⁾ ⁸⁸⁸⁾ ⁸⁸⁹⁾ ⁸⁹⁰⁾ ⁸⁹¹⁾ ⁸⁹²⁾ ⁸⁹³⁾ ⁸⁹⁴⁾ ⁸⁹⁵⁾ ⁸⁹⁶⁾ ⁸⁹⁷⁾ ⁸⁹⁸⁾ ⁸⁹⁹⁾ ⁹⁰⁰⁾ ⁹⁰¹⁾ ⁹⁰²⁾ ⁹⁰³⁾ ⁹⁰⁴⁾ ⁹⁰⁵⁾ ⁹⁰⁶⁾ ⁹⁰⁷⁾ ⁹⁰⁸⁾ ⁹⁰⁹⁾ ⁹¹⁰⁾ ⁹¹¹⁾ ⁹¹²⁾ ⁹¹³⁾ ⁹¹⁴⁾ ⁹¹⁵⁾ ⁹¹⁶⁾ ⁹¹⁷⁾ ⁹¹⁸⁾ ⁹¹⁹⁾ ⁹²⁰⁾ ⁹²¹⁾ ⁹²²⁾ ⁹²³⁾ ⁹²⁴⁾ ⁹²⁵⁾ ⁹²⁶⁾ ⁹²⁷⁾ ⁹²⁸⁾ ⁹²⁹⁾ ⁹³⁰⁾ ⁹³¹⁾ ⁹³²⁾ ⁹³³⁾ ⁹³⁴⁾ ⁹³⁵⁾ ⁹³⁶⁾ ⁹³⁷⁾ ⁹³⁸⁾ ⁹³⁹⁾ ⁹⁴⁰⁾ ⁹⁴¹⁾ ⁹⁴²⁾ ⁹⁴³⁾ ⁹⁴⁴⁾ ⁹⁴⁵⁾ ⁹⁴⁶⁾ ⁹⁴⁷⁾ ⁹⁴⁸⁾ ⁹⁴⁹⁾ ⁹⁵⁰⁾ ⁹⁵¹⁾ ⁹⁵²⁾ ⁹⁵³⁾ ⁹⁵⁴⁾ ⁹⁵⁵⁾ ⁹⁵⁶⁾ ⁹⁵⁷⁾ ⁹⁵⁸⁾ ⁹⁵⁹⁾ ⁹⁶⁰⁾ ⁹⁶¹⁾ ⁹⁶²⁾ ⁹⁶³⁾ ⁹⁶⁴⁾ ⁹⁶⁵⁾ ⁹⁶⁶⁾ ⁹⁶⁷⁾ ⁹⁶⁸⁾ ⁹⁶⁹⁾ ⁹⁷⁰⁾ ⁹⁷¹⁾ ⁹⁷²⁾ ⁹⁷³⁾ ⁹⁷⁴⁾ ⁹⁷⁵⁾ ⁹⁷⁶⁾ ⁹⁷⁷⁾ ⁹⁷⁸⁾ ⁹⁷⁹⁾ ⁹⁸⁰⁾ ⁹⁸¹⁾ ⁹⁸²⁾ ⁹⁸³⁾ ⁹⁸⁴⁾ ⁹⁸⁵⁾ ⁹⁸⁶⁾ ⁹⁸⁷⁾ ⁹⁸⁸⁾ ⁹⁸⁹⁾ ⁹⁹⁰⁾ ⁹⁹¹⁾ ⁹⁹²⁾ ⁹⁹³⁾ ⁹⁹⁴⁾ ⁹⁹⁵⁾ ⁹⁹⁶⁾ ⁹⁹⁷⁾ ⁹⁹⁸⁾ ⁹⁹⁹⁾ ¹⁰⁰⁰⁾ ¹⁰⁰¹⁾ ¹⁰⁰²⁾ ¹⁰⁰³⁾ ¹⁰⁰⁴⁾ ¹⁰⁰⁵⁾ ¹⁰⁰⁶⁾ ¹⁰⁰⁷⁾ ¹⁰⁰⁸⁾ ¹⁰⁰⁹⁾ ¹⁰¹⁰⁾ ¹⁰¹¹⁾ ¹⁰¹²⁾ ¹⁰¹³⁾ ¹⁰¹⁴⁾ ¹⁰¹⁵⁾ ¹⁰¹⁶⁾ ¹⁰¹⁷⁾ ¹⁰¹⁸⁾ ¹⁰¹⁹⁾ ¹⁰²⁰⁾ ¹⁰²¹⁾ ¹⁰²²⁾ ¹⁰²³⁾ ¹⁰²⁴⁾ ¹⁰²⁵⁾ ¹⁰²⁶⁾ ¹⁰²⁷⁾ ¹⁰²⁸⁾ ¹⁰²⁹⁾ ¹⁰³⁰⁾ ¹⁰³¹⁾ ¹⁰³²⁾ ¹⁰³³⁾ ¹⁰³⁴⁾ ¹⁰³⁵⁾ ¹⁰³⁶⁾ ¹⁰³⁷⁾ ¹⁰³⁸⁾ ¹⁰³⁹⁾ ¹⁰⁴⁰⁾ ¹⁰⁴¹⁾ ¹⁰⁴²⁾ ¹⁰⁴³⁾ ¹⁰⁴⁴⁾ ¹⁰⁴⁵⁾ ¹⁰⁴⁶⁾ ¹⁰⁴⁷⁾ ¹⁰⁴⁸⁾ ¹⁰⁴⁹⁾ ¹⁰⁵⁰⁾ ¹⁰⁵¹⁾ ¹⁰⁵²⁾ ¹⁰⁵³⁾ ¹⁰⁵⁴⁾ ¹⁰⁵⁵⁾ ¹⁰⁵⁶⁾ ¹⁰⁵⁷⁾ ¹⁰⁵⁸⁾ ¹⁰⁵⁹⁾ ¹⁰⁶⁰⁾ ¹⁰⁶¹⁾ ¹⁰⁶²⁾ ¹⁰⁶³⁾ ¹⁰⁶⁴⁾ ¹⁰⁶⁵⁾ ¹⁰⁶⁶⁾ ¹⁰⁶⁷⁾ ¹⁰⁶⁸⁾ ¹⁰⁶⁹⁾ ¹⁰⁷⁰⁾ ¹⁰⁷¹⁾ ¹⁰⁷²⁾ ¹⁰⁷³⁾ ¹⁰⁷⁴⁾ ¹⁰⁷⁵⁾ ¹⁰⁷⁶⁾ ¹⁰⁷⁷⁾ ¹⁰⁷⁸⁾ ¹⁰⁷⁹⁾ ¹⁰⁸⁰⁾ ¹⁰⁸¹⁾ ¹⁰⁸²⁾ ¹⁰⁸³⁾ ¹⁰⁸⁴⁾ ¹⁰⁸⁵⁾ ¹⁰⁸⁶⁾ ¹⁰⁸⁷⁾ ¹⁰⁸⁸⁾ ¹⁰⁸⁹⁾ ¹⁰⁹⁰⁾ ¹⁰⁹¹⁾ ¹⁰⁹²⁾ ¹⁰⁹³⁾ ¹⁰⁹⁴⁾ ¹⁰⁹⁵⁾ ¹⁰⁹⁶⁾ ¹⁰⁹⁷⁾ ¹⁰⁹⁸⁾ ¹⁰⁹⁹⁾ ¹¹⁰⁰⁾ ¹¹⁰¹⁾ ¹¹⁰²⁾ ¹¹⁰³⁾ ¹¹⁰⁴⁾ ¹¹⁰⁵⁾ ¹¹⁰⁶⁾ ¹¹⁰⁷⁾ ¹¹⁰⁸⁾ ¹¹⁰⁹⁾ ¹¹¹⁰⁾ ¹¹¹¹⁾ ¹¹¹²⁾ ¹¹¹³⁾ ¹¹¹⁴⁾ ¹¹¹⁵⁾ ¹¹¹⁶⁾ ¹¹¹⁷⁾ ¹¹¹⁸⁾ ¹¹¹⁹⁾ ¹¹²⁰⁾ ¹¹²¹⁾ ¹¹²²⁾ ¹¹²³⁾ ¹¹²⁴⁾ ¹¹²⁵⁾ ¹¹²⁶⁾ ¹¹²⁷⁾ ¹¹²⁸⁾ ¹¹²⁹⁾ ¹¹³⁰⁾ ¹¹³¹⁾ ¹¹³²⁾ ¹¹³³⁾ ¹¹³⁴⁾ ¹¹³⁵⁾ ¹¹³⁶⁾ ¹¹³⁷⁾ ¹¹³⁸⁾ ¹¹³⁹⁾ ¹¹⁴⁰⁾ ¹¹⁴¹⁾ ¹¹⁴²⁾ ¹¹⁴³⁾ ¹¹⁴⁴⁾ ¹¹⁴⁵⁾ ¹¹⁴⁶⁾ ¹¹⁴⁷⁾ ¹¹⁴⁸⁾ ¹¹⁴⁹⁾ ¹¹⁵⁰⁾ ¹¹⁵¹⁾ ¹¹⁵²⁾ ¹¹⁵³⁾ ¹¹⁵⁴⁾ ¹¹⁵⁵⁾ ¹¹⁵⁶⁾ ¹¹⁵⁷⁾ ¹¹⁵⁸⁾ ¹¹⁵⁹⁾ ¹¹⁶⁰⁾ ¹¹⁶¹⁾ ¹¹⁶²⁾ ¹¹⁶³⁾ ¹¹⁶⁴⁾ ¹¹⁶⁵⁾ ¹¹⁶⁶⁾ ¹¹⁶⁷⁾ ¹¹⁶⁸⁾ ¹¹⁶⁹⁾ ¹¹⁷⁰⁾ ¹¹⁷¹⁾ ¹¹⁷²⁾ ¹¹⁷³⁾ ¹¹⁷⁴⁾ ¹¹⁷⁵⁾ ¹¹⁷⁶⁾ ¹¹⁷⁷⁾ ¹¹⁷⁸⁾ ¹¹⁷⁹⁾ ¹¹⁸⁰⁾ ¹¹⁸¹⁾ ¹¹⁸²⁾ ¹¹⁸³⁾ ¹¹⁸⁴⁾ ¹¹⁸⁵⁾ ¹¹⁸⁶⁾ ¹¹⁸⁷⁾ ¹¹⁸⁸⁾ ¹¹⁸⁹⁾ ¹¹⁹⁰⁾ ¹¹⁹¹⁾ ¹¹⁹²⁾ ¹¹⁹³⁾ ¹¹⁹⁴⁾ ¹¹⁹⁵⁾ ¹¹⁹⁶⁾ ¹¹⁹⁷⁾ ¹¹⁹⁸⁾ ¹¹⁹⁹⁾ ¹²⁰⁰⁾ ¹²⁰¹⁾ ¹²⁰²⁾ ¹²⁰³⁾ ¹²⁰⁴⁾ ¹²⁰⁵⁾ ¹²⁰⁶⁾ ¹²⁰⁷⁾ ¹²⁰⁸⁾ ¹²⁰⁹⁾ ¹²¹⁰⁾ ¹²¹¹⁾ ¹²¹²⁾ ¹²¹³⁾ ¹²¹⁴⁾ ¹²¹⁵⁾ ¹²¹⁶⁾ ¹²¹⁷⁾ ¹²¹⁸⁾ ¹²¹⁹⁾ ¹²²⁰⁾ ¹²²¹⁾ ¹²²²⁾ ¹²²³⁾ ¹²²⁴⁾ ¹²²⁵⁾ ¹²²⁶⁾ ¹²²⁷⁾ ¹²²⁸⁾ ¹²²⁹⁾ ¹²³⁰⁾ ¹²³¹⁾ ¹²³²⁾ ¹²³³⁾ ¹²³⁴⁾ ¹²³⁵⁾ ¹²³⁶⁾ ¹²³⁷⁾ ¹²³⁸⁾ ¹²³⁹⁾ ¹²⁴⁰⁾ ¹²⁴¹⁾ ¹²⁴²⁾ ¹²⁴³⁾ ¹²⁴⁴⁾ ¹²⁴⁵⁾ ^{1246)</}

까지의 사유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② 법 제69조의7 제4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2.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3.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4.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居所)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5.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사유별 비율을 보면 적자 또는 매출액 감소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민원 빈발

< 자영업자 고용보험 수급사유별 현황>

(단위: 명)

연도	전체	적자 또는 매출액 감소 (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 제1항 제1호)	상생협력 촉진 (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 제1항 제2호)	무역 조정 (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 제1항 제3호)	기타 경영악화 (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 제1항 제4호)	기타 정당한 사유 (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 제2항)
'20	1,495	1,173	2	0	22	298
'21	2,056	1,678	2	0	17	359
'22	2,575	2,042	2	0	14	517

(출처: 고용노동부)

- 특히, '6개월 연속 적자'(위 규정 제1항 제1호 가목)를 요구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영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

■ 권익위 실태조사(서울권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 인터뷰) 결과

- ① 6개월 연속 적자는 매출뿐만 아니라 비용(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까지 증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증빙이 굉장히 어려움
- ② 위와 같은 사유로 심사 역시 어렵기 때문에, 담당자에 따라서는 민원인에게 적자 보다는 매출감소 사유로 신청할 것을 유도하기도 함
- ③ 6개월 연속 적자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출감소의 경우에 비해 드뭄
- ④ 폐업 직전에 재고처리(소위 땡처리)로 인해 매출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 폐업 현실과 괴리
- ⑤ 실업급여 수급 액수를 고려하면 자영업자에게 수급을 위해 6개월간 적자를 버티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음
- ⑥ 오로지 장기간 적자 또는 급격한 매출감소를 요구하다 보니, 영업이익 또는 매출이 최저생계비 수준도 안되는 경우가 발생해도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어떻게든 매출을 올려보려고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 작년보다 10~20만 원 매출이 더 생겼음. 하지만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50~60만으로 최저생계비도 안됨. 한 달 가게 유지비도 겨우 버는데, 매출이 흑자고 작년보다 매출이 늘었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함 (*국민신문고, '23.10.*)

■ 6개월 중 딱 한 달 흑자가 있었음. 매출매입내역만 봐도 번 것이 없고, 점포 임대료 때문에 신용불량 직전인데, 6개월 적자 중에 한 달 흑자 났다고 사유가 안된다고 함. 그럼 실업급여 받으려고 돈 안벌고 그냥 6개월 동안 계속 적자라도 내야 하는건지 (*국민신문고, '19.4.*)

□ '적자 또는 매출 감소' 증빙의 어려움

- 적자 또는 매출액 감소를 증빙하는 제출서류는 고용노동부 내부 업무처리지침에서 제시하고 있음

■ 적자 또는 매출액 감소를 증빙하기 위한 제출서류(과세사업자)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6개월 연속 적자)

복식부기의무자	1. 관련 연도 월별손익계산서(또는 6개월 연속적자로 인한 폐업확인서) 및 매출·비용 증빙자료 2. 관련 연도 표준손익계산서(국세청 자료) 3. 관련연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국세청 자료)
간편장부 대상자	1. 6개월 연속적자로 인한 폐업확인서 및 매출·비용 증빙자료 2.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국세청 자료)

②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매출감소)

복식부기의무자	1. 관련 연도 매출총계정원장(또는 매출액 감소로 인한 폐업 확인서) 및 매출증빙자료 2. 관련연도 표준손익계산서(국세청 자료) 3. 관련연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국세청 자료)
간편장부 대상자	1. 매출액 감소로 인한 폐업확인서 및 매출 증빙자료 2.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국세청 자료)

- 해당 서류 준비에 상당한 세무·회계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 빈발
- 특히, 세무사 또는 회계사 도움을 받기 힘든 영세한 자영업자일수록 더욱 어려움 가능성 높음

■ 아파트 단지 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 2018년도 전체 매출이 1,100만 원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음. 문제는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매출총계장원장, 월별 손익계산서 등 서류 증빙이 필요하다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음. 영세 자영업자라 세무사를 이용하기도 부담스러우니 현실적으로 준비 가능한 증빙서류를 안내받고 싶음. (국민신문고, '19.6.)

■ 매출총계장원장을 제출해야하는데 양식이 따로 있는지? 양식이 따로 없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제출하면 무방한지? (국민신문고, '23.1.)

- 또한, 자영업자의 수급자격 신청이 드물고* 심사에 세무·회계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고용센터 담당자 입장에서도 상담 및 심사 어려운 측면이 있음

* '22년 실업급여 수급자 수: 임금근로자 1,730,533명, 자영업자 2,575명

- 고용센터 담당자의 부정확한 안내로 인한 불만 민원 발생

- 고용센터 담당자가 세무지식이 없어 서류 보완을 이유로 7번을 방문해야 했음. 너무 힘들어서 세무사에게 비용 60만원을 지급하고 서류를 보완하였으나 결국 수급자격이 불인정 되었음. 시간을 낭비하고 세무사 비용이 나간 것을 생각하니 어이가 없음. (국민신문고, '18.6.)
- 서류제출을 위해 00고용센터를 여러번 방문해야 했음. 그런데 알고보니 수급 기간이 도과하여 애초에 수급을 받을 수 없었음. 담당자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였다면 시간 낭비는 하지 않았을 것임. (국민신문고, '21.8.)
- (00고용센터 답변) 확인 결과 담당자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이 빈번하지 않아 상담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시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음.

□ 기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확인의 어려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 제2항 제6호*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이 어려움

- 관계기관 홈페이지, SNS, 홍보 콘텐츠 등에 안내되어 있지 않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② 법 제69조의7 제4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6.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기타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장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인정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
- 다만,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임신·출산 또는 육아로 계속적 사업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 고용센터가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의 낮은 체감도

- 정부 및 지자체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방식은 지원대상자가 먼저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 지원금액만큼 환급 받는 방식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보험료를 납부한 후 환급까지 통상 2~3개월 소요, 환급시기가 불규칙하고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불만 발생
- 영세한 자영업자일수록 환급 지연에 따른 보험료 부담 가중

- 1월달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후 지금까지 보험료를 두 번 납부했으나, 아직까지 환급되지 않았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전화를 여러 번 했으나 연결이 어려워 이렇게 국민신문고로 질의함. (국민신문고, '22.3.)
- 1~4월분이 환급되지 않았음. 혹시 또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 (국민신문고, '23.2.)

IV. 개선방안

1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범위 등 개선(고용노동부, 정책제안)

- 자영업자의 특성, 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혜택 범위·최소 가입기간·실업급여 지급기간 등 개선

※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임의가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높은 국가(덴마크, 스웨덴 등) 사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가입률을 목표로 설정하고 개선 추진 필요

※ 다만, 사회보험 제도의 복잡성, 다른 직종 가입자와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하고 치밀한 설계가 필요하므로, 정책제안 사항으로 제시

2 인지도 개선(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홍보 강화)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계획 수립 및 실행
- (정보제공 확대) 각 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① 가입대상 및 보험료, ② 혜택내용, ③ 실업급여 지급요건, ④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반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 특히 '③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 업데이트 필요
- (안내강화) 민원인이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어느 쪽에 문의하여도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안내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복지공단 및 전국 고용센터에 전파

□ '적자 또는 매출액 감소' 요건 정비 및 증빙서류 간소화(정책제안)

- 자영업자 영업 및 폐업 현실을 반영하여 '적자 또는 매출액 감소' 요건을 정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 제1항 제1호 정비
- 증빙자료를 정한 업무처리지침을 정비하여 증빙자료 간소화

※ 다만,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모두 고려한 신중하고 치밀한 설계가 필요하므로, 정책제안 사항으로 제시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매뉴얼 제작·배포

- 가입자가 폐업 전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신청 매뉴얼을 제작하고 가입자에게 제공
 - ①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② 폐업사유별 증빙자료, ③ 증빙자료 해설 및 준비 방법, ④ 구체적인 심사기준, ⑤ 신청방법, ⑥ 수급자격 인정·불인정 사례 등을 포함하여 제작

□ 기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주요 사례 홍보·안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 제2항 제6호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주요 사례를 안내
 - 해당 주요 사례를 선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위 수급자격 신청 매뉴얼에도 안내하는 등 홍보 및 안내에 적극 활용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수급자격 인정 명문화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을 개정하여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도록 명확하게 규정

현행	개정안(예시)
제115조의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① (생략)	제115조의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9조의7제4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6. 임신·출산 또는 육아로 계속적 사업 운영이 곤란하여 폐업한 경우
6. (생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4

지역일자 고용보험료 지원 방식 개선(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 정책제안)

□ (기존) 환급 방식 → (개선) 원래 납부해야 하는 월 보험료에서 보험금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부과(차감지원 방식)

※ 다만, 차감지원 방식 도입은 서로 다른 기금재원의 관리(집행·결산 등), 관계기관(고용부, 중기부, 소진공,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간의 협의문제, 공공기관 수행 인력 문제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책제안 사항으로 제시

V. 조치사항

□ 조치사항 및 대상기관

세부과제명	조치내용	대상기관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장범위 확대	○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범위, 최소 가입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등 개선 (정책제안)	고용노동부
② 인지도개선	○ 자영업자 고용보험 홍보 강화 계획 수립 및 실행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관 운영 홈페이지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반에 대한 상세 정보* 업데이트 * ① 가입대상 및 보험료, ② 혜택내용, ③ 실업급여 수급요건, ④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민원인 안내강화 방안 마련 및 전파	고용노동부
③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부담 완화	○ '적자 또는 매출액 감소' 요건 정비 및 증빙서류 간소화 (정책제안)	고용노동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매뉴얼 제작·배포	
	○ 기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주요 사례 홍보·안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 제2항 제6호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 개정 ※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도록 명확하게 규정	
④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방식 개선	○ 원래 납부해야 하는 월 보험료에서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 (정책제안)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 조치기한: 2024. 12월



정 본 입 니 다 .

2023. 12. 19.

국 민 권 익 위 원 회



A C B C